

##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8. 19.

###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



- 건 명: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- 근 거: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도별 시행지침  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동법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| 연번 | 성명  | 생년월일    | 서류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의 주요내용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송달불능 사유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         | 처분사유   |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  | 강O환 | 98.8.8. |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직권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|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처분 |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|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계약 직권 중도해지 처분 | 폐문부재    |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로40번길 22, 403호 |

4. 공고기간: 2024.8.19. ~ 2024.9.2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하지아(Tel. 031-412-693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